

더 적합한 듯하지만, ‘관직’의 차이 역시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나름의 역사적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康熙 □□大清會典□□은 淸에 조공하는 “各國의 次序는 (처음) 入貢한 해를 (기준으로) 先後”를 정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³⁵⁾ 조선에 대하여 “諸番 가운데 勅順이 가장 빨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³⁶⁾ 이는 崇德 연간에 처음 입공한 조선에, 각기 順治 연간과 康熙 연간에 입공한 琉球와 베트남 보다는 더 높은 위상을 부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단지 입공의 선후만이 아니라 입공 당시의 상황 역시 직사의 인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淸의 太宗은 崇德 元年 12월에 조선을 침공하였다(丙子胡亂). 조선의 仁祖는 그 무력에 굴복하여 三田渡에서 치욕스러운 항복 의식을 치러야 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전대미문의 굴욕으로 기억하지만, 압도적인 무력에 무릎을 꿇고 稱臣함으로써 朝貢國이 된 조선에 대한 淸의 인식은 우리의 예상과는 멀지감치 떨어진 것이었다. 仁祖가 三田渡의 치욕을 겪어야 했던 崇德 2년 正月 庚午의 상황을 전하는 다음 기록에 주목해 보자.

禮部の 관원이 ... 李倬의 班次[를 어찌 할지] 奏請하자, 황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세로써 그를 떨게 하는 것은 덕으로써 그를 품는 것만 못하다. 朝鮮의 王은 비록 兵勢에 물려서 [어쩔 수 없이] 來歸하였지만, 역시 一國의 王이다.” 命을 내려 앞으로 다가와 왼쪽에 앉게 했다. ... 그 다음으로 는 왼쪽에 和碩親王, 多羅郡王, 多羅貝勒 등의 순서대로 앉았고, 李倬의 長子 李왕이 貝勒의 아래에 앉았다.³⁷⁾

이 기록에 의하면, 淸의 太宗은 “以德懷之”의 차원에서 당시 제2위의 자리

35) 康熙 □□大清會典□□ 卷72, 1b쪽.

36) 康熙 □□大清會典□□ 卷72, 3b쪽.

37) □□太宗實錄□□ 卷33, 崇德 2年 正月 庚午, 432쪽.

에 仁祖(李祿)를 앉혔고, 그 이유로 仁祖가 엄연한 “一國之王”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같은 상황을 전하는 □□淸朝文獻通考□□는 “一國之王” 대신에 “一國之主”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主”란 만주어 “ejen”의 번역이었을 것이다.³⁸⁾ “一國之王”이든 “一國之主”이든 간에, 淸 太宗은 仁祖가 남의 신하가 아니라 엄연한 ‘주권자’인 남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던 셈이다. 물론 淸 太宗의 이러한 태도는 後顧의 염려를 덜기 위한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제스처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朝鮮國王의 班次는 황제에 다음 가는 자리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조선형’ 칙사의 인선에서 3품 이상의 고급 관원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정례의 성립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康熙 12년에 정해진 宗室 封爵의 책봉에 관한 의례를 보면, 郡王 이상을 책봉할 때에는 內大臣이나 散秩大臣을 정사로, 內閣과 翰林院의 學士나 禮部侍郎을 부사로 한 반면에, 貝勒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內閣의 侍讀學士, 侍讀, 翰林院의 侍讀學士, 侍講學士, 侍讀, 侍講을 정사로, 禮部の 郎中, 員外郎, 主事를 부사로 삼고 있다. 이는 필자의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³⁹⁾

그러나 三田渡의 班次 결정에서 보이는 朝鮮國王에 대한 ‘우대’는 입관 이후 淸의 칙사 인선에서 漢人 출신이 배제된 까닭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형’과 ‘유구형’의 두 번째 차이점, 즉 ‘출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각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선의 군사적 중요성일 것이다. 사실 입관 전의 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조선 침략을 단행했던 데에는 부족한 물자와 인력을 조달함과 동시에 明과의 전쟁에서 後顧의 염려를 잠재운다는 군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한명기 2006: 230-241). 입관 후에도 조선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나라였다. 수도인 北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나라

38) □□淸朝文獻通考□□ 卷293, 考7418쪽.

39) □□欽定八旗通志□□ 卷78, 1336쪽.

이자 과거의 적국이었던 탓에 淸은 조선에 대하여 後顧의 염려를 완전히 떨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역시 淸의 피정복민 출신인 漢人을 조선에 칙사로 파견하는 데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에는 중대한 약점이 있다. 먼저 이 설명은 淸의 漢人 관료를 죄다 잠재적인 反淸 세력으로 가정해야만 성립할 수가 있는데, 입관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런 가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18세기와 19세기까지 유효한 가정으로 간주하기엔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漢人 칙사가 조선과 反淸 행위를 공모할 가능성을 淸이 염려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염려는 旗人 칙사를 함께 파견함으로써 얼마든지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조선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淸이 漢人 칙사를 조선에 파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滿漢을 가리지 않았던 ‘유구형’ 인선은 琉球와 베트남이 군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淸은 順治 연간 내내 李自成 등이 이끌던 농민반란의 잔존 세력과 여러 南明 정권을 제압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했으며, 동남 연해를 무대로 反淸 활동을 계속한 鄭氏 세력 때문에 順治 13년에는 海禁을, 順治 18년에는 遷界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康熙 초에는 三藩의 亂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어야 했다(Dennerline 2002: 136-150). 다시 말해서 입관 이후 1680년대 초까지는 琉球와 베트남이 인접하고 있는 동남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오히려 조선 방면보다도 훨씬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淸이 琉球와 베트남에 漢人을 칙사로 파견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면, 군사적 고려가 조선에 파견하는 칙사의 인선에서 漢人을 배제한 이유가 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할 듯하다.

하지만 적어도 順治 연간까지는 조선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요인과 결합하는 경우 淸이 조선에 파견하는 칙사의 인선에서 漢人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조선은 淸의 朝貢國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淸을 줄곧 오랑캐로 여기고 한 동안 北伐을 기도하기까지 하였다. 조선의 뿌리 깊은 反

淸 의식을 고려한다면, 淸이 조선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품고 감시의 눈을 떼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한명기 2003: 55-66). 그러나 淸의 조선에 대한 의심과 감시의 필요성은 反淸復明 세력을 최종적으로 제거한 17세기 말 이후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홍성구 2005: 113-129).

사실 18세기 이후 淸朝의 조선 인식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읽어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단적인 사례로, 康熙 45년 10월, 康熙帝는 시종 明을 배반하지 않았던 조선에 대하여 적대감을 표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賞讚할 정도의 우호적인 조선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⁴⁰⁾ 康熙帝의 이런 인식은 한 발 더 나아가, 太宗의 조선 침공이 譯官들의 장난으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하였다.⁴¹⁾ 이러한 康熙帝의 조선 인식은 훗날의 황제들에게도 고스란히 계승되었다.⁴²⁾

18세기 이후 뚜렷해지는 淸-조선의 우호적 관계는 淸의 조선에 대한 칙사 파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17세기 후반의 경우 淸은 걸핏하면 조선에 칙사를 파견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칙사 파견의 사유 또한 실로 다양하였다. 예컨대 順治 연간 18년 동안에 청조는 칙사를 39회나 파견하였고, 康熙 연간에는 초기 20년 동안에 26회 파견하여, 그 빈도가 연 평균 1회를 넘어서고 있었다. 또한 칙사를 파견한 사유 가운데에는 조선에 대한 견제나 노골적인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어 이후에는 칙사 파견의 빈도가 점차 낮아져서, 乾隆 연간의 경우에는 60년 동안 겨우 18회의 칙사를 파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추세는 19세기에 도 지속되었다. 또 淸이 칙사를 파견한 사유도 두 나라 군주의 중대한 ‘慶弔

40) □□康熙實錄□□ 卷227, 康熙 45年 10月 丁未, 275쪽.

41) □□康熙實錄□□ 卷249, 康熙 51年 3月 辛卯, 470쪽.

42) “朝鮮國素稱恭順, 比於內臣”(□□乾隆實錄□□ 卷1215, 乾隆 49年 9月 庚辰, 297쪽); “朝鮮國較之諸外藩, 歸命最先, 受恩尤重”(□□嘉慶實錄□□ 卷37, 嘉慶 4年 正月 丙寅, 418쪽); “朝鮮國久列藩封, 最為恭順”(□□道光實錄□□ 卷3, 嘉慶 25年(道光 즉위년: 인용자) 8月 戊申, 110쪽) 등을 참조.

辭'로 제한되었다. 예컨대 嘉慶 연간에 淸의 칙사 파견은 모두 여덟 차례 있었는데, 첫 번째는 乾隆帝의 사망을, 두 번째는 乾隆帝의 “配祀天地”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正祖의 諡祭와 純祖의 책봉, 네 번째는 皇后 冊立, 다섯 번째는 조선의 왕비 책봉, 여섯 번째는 조선의 貞純大妃 諡祭 등이 칙사 파견의 사유였으며, 일곱 번째는 조선의 世子 책봉을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嘉慶帝의 사망과 道光帝의 등극을 알리기 위한 칙사 파견이었다.⁴³⁾ 따라서 초기의 칙사 파견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후기의 경우는 의례적인 성격에 불과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우호적인 양국 관계 속에서 진행된 대단히 의례적인 칙사 파견에 조선에 대한 淸의 의심과 견제가 칙사 인선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다.

물론 초기의 의심과 견제가 동기가 되어 칙사의 인선에서 漢人을 배제하는 관행이 굳어졌고 그것이 祖法 목수의 관성 탓에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道光 중기 이후 칙사 인선의 변화를 보면 祖法 목수의 관성을 인정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므로 漢人을 배제하는 ‘조선형’ 칙사 인선의 ‘원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結論: ‘大清帝國體制’와 勅使 人選의 原理

조선의 군사적 중요성이나 淸의 조선에 대한 의심이나 견제가 ‘조선형’ 칙사 인선에서 관찰되는 漢人의 배제 현상과 그 강고한 지속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淸의 칙사 인선에서 드러난 ‘조선형’과 ‘유구형’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필자는 지나친 비약으로 흐르게 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선형’ 칙사 인선에 나타나는 漢人 배제 현상을 설명

43) □□同文彙考□□ 補編 卷9 「詔勅錄」, 4b-41b쪽.

하기 위하여 다소 과감한 試論的 해석을 시도해 보는 것으로 본고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새로운 해석을 위한 실마리는 책봉 관계의 성립 시점과 그 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을 듯하다. 다음의 세 기사는 조선, 琉球, 베트남 등이 淸의 책봉을 받은 시점과 그 방식을 간단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 (㉠) 崇德 2年, 朝鮮國王 李倭이 온 나라를 들어 歸附하였다. 勅을 내려 [그를] 朝鮮國王으로 책봉하였다. 龜紐金印을 하사하였으며 誥封을 주었다. 王의 妻는 王妃로, 아들은 世子로 책봉하였다.⁴⁴⁾
- (㉡) 順治 11년, 琉球國의 世子 尚質이 陪臣을 보내어 明季의 鍍金銀印 一顆와 襲封王爵詔 한 통, 勅書 한 통 등을 반납하였다. 正·副使를 파견하여 詔와 勅 각 한 통 및 鍍金駝紐銀印 一顆를 가지고 가서 琉球國의 世子 尚質을 中山王으로 책봉하였다.⁴⁵⁾
- (㉢) 康熙 5年, 安南國의 世子 黎維禔가 明季의 勅 한 통, 印 一顆를 보내 왔다. 正·副使를 파견하여 勅 및 주조해 준 鍍金駝紐銀印을 가지고 가서 黎維禔를 安南國王으로 책봉하였다.⁴⁶⁾

먼저 (㉠)에서 보듯이 淸의 朝鮮國王 책봉은 입관 전인 崇德 연간에 淸이 조선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킨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반면에 (㉡)과 (㉢)에서 보듯이 琉球와 베트남은 모두 입관 이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淸의 朝貢國이 되었다. 두 나라가 明의 책봉을 받으면서 수령했던 칙서와 도장을 반납하자, 淸은 이를 대체하는 칙서와 도장을 발급해 줌으로써 두 나라의 국왕을 책봉하였던 것이다. 비유하건대, 朝-淸의 관계가 淸이 무력을 동원하여 직접 ‘획득’한 것이었다면, 淸이 琉球·베트남과 맺은 관계는 明의 유산을 ‘상속’한 것이었던 셈이다.

44) 嘉慶 □□欽定大清會典事例□□ 卷392, 2b-3a쪽.

45) 嘉慶 □□欽定大清會典事例□□ 卷392, 3b쪽.

46) 嘉慶 □□欽定大清會典事例□□ 卷392, 4b쪽.

그렇다면 책봉의 시점과 그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칙사의 인선 유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맨콜의 ‘이원구조’에 다시 주목해보자. 맨콜의 ‘이원구조’는 淸의 조공체제(the tributary system)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과거 明의 영토였던 直省도 어떤 의미에서는 ‘동남 초승달’ 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直省의 통치를 위하여 淸은 明의 典章制度를 계승함과 동시에 滿·漢 출신을 모두 등용하였다. 반면에 ‘서북 초승달’ 지역에 속하는 藩部 통치에는 漢人 출신 관료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또한 이 같은 통치의 ‘원리’는 적어도 19세기 중엽까지는 엄격하게 준수되었다.

그런데, 淸이 일관되게 漢人의 참여를 배제하였던 藩部와, 본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칙사의 인선에서 漢人의 참여가 역시 일관되게 배제되었던 조선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藩部는 비록 18세기 중엽에 완성된 것이지만, 淸의 입장에서 藩部の 형성은 17세기 초에 시작된 淸의 몽골에 대한 통제에서 그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차하르를 복속시키는 데 성공한 後金の 汗 홍타이지는 1636년에 ‘大清’의 성립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당시 조선은 ‘大明’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항하여 홍타이지가 구축하려 했던 ‘大清’ 중심의 독자적인 국제 질서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이에 홍타이지는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丙子胡亂)시켰고, 조선은 ‘大清’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崇德 연간의 조선은 훗날 藩部 형성의 단초가 되는 몽골과 함께 ‘大明’ 질서에 대항하는 ‘大清’ 질서의 兩翼을 구성하게 되었다.⁴⁷⁾

47) 청은 1636년에 몽골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몽고아문을 설치하였다가, 1638년에 이르러 그 이름을 이번원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조선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는 따로 설치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승덕 연간 청조의 조선 관련 사무가 입관 이후와 마찬가지로 예부의 관할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입관 전 禮部를 포함한 六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淸이 같은 ‘外藩’임에도 불구하고 몽골과 조선에 관한 사무를 별도의 기구에 맡겼던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터이지만, 전자의 사무에는 몽골어가,

한편 ‘유구형’ 칙사 인선과 명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의 인선(前述)을 비교해 보면, 宦官의 칙사 파견을 제외하면 인선의 대상이 된 관직에 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유구형’ 인선은 명의 방식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崇德 연간의 시점에서 琉球·베트남은 여전히 ‘大明’ 질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琉球·베트남은 淸이 명의 典章制度를 계승함과 동시에 滿·漢 출신을 모두 등용하였던 直省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崇德 연간의 ‘大清’ 질서와 ‘大明’ 질서를 통합하여 확대·발전 시킨 ‘大清帝國體制’의 공간은 漢人 출신 관원의 참여가 인정되었느냐를 기준으로 두 가지 공간으로 나눌 수 있었다. 崇德 연간의 ‘大清’ 질서에 속했던 공간에서는 漢人의 참여가 인정되지 않았던 반면에, 崇德 연간 여전히 ‘大明’ 질서에 속해 있던 공간에 대해서는 漢人의 참여가 인정되었다. 전자에는 조선과 함께 몽골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8세기 중엽에 완성된 藩部는 淸의 입장에서 볼 때 崇德 연간의 몽골이 확대된 것이었다. 후자에는 과거 명의 영토와 琉球·베트남과 같은 朝貢國이 속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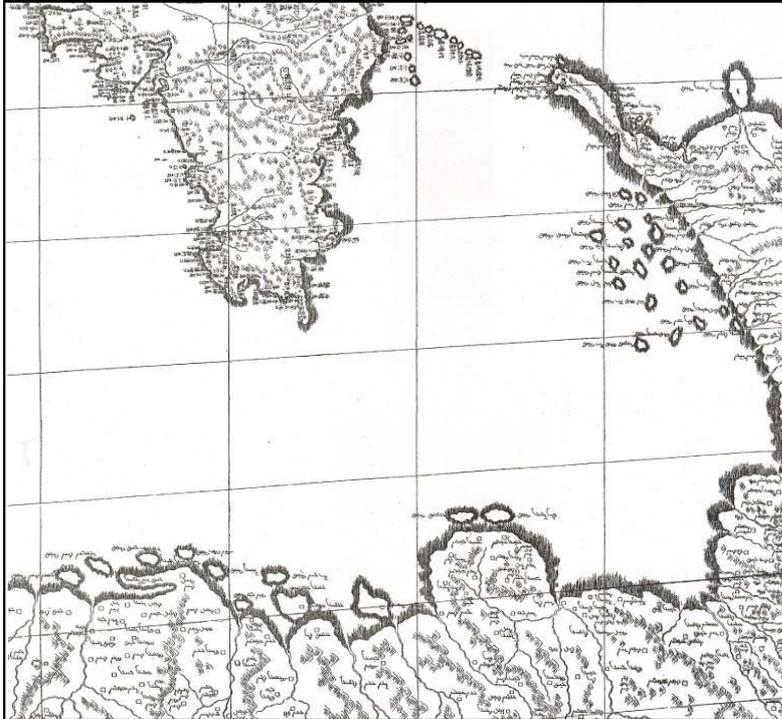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맨콜의 ‘이원구조’에서 조선은 琉球·베트남과 동일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淸의 ‘조선형’ 칙사 인선에 나타나는 漢人 배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필자의 試論的 해석에 따르자면 琉球·베트남과는 다른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조선을 ‘大明’ 질서의 바깥에 위치시키는 淸의 인식은 康熙 연간에 완성된 □□皇輿全覽圖□□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皇輿全覽圖□□의 여러 판본 가운데 康熙 58년의 銅版并幅本은, 民國 연간 瀋陽에서 발견되어 金梁에 의해 □□淸內府—統輿地秘圖□□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孫喆 2003: 53-45).⁴⁸⁾ □□皇輿全覽圖□□의 다른 판

후자에는 한문이 주요 언어로 사용되었던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 본다. 이런 추정은 연세대 사학과 차혜원 교수의 조언에 힘입은 것이다.

48) 이 지도는 국내의 경우 서울대 도서관에 1책(분류번호: 大 4709 53)이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淸廷三大實測全圖集의 일부로 영인·출판된 바 있다(□□淸廷三大實測全圖: 康熙皇輿全覽圖□□, 北京: 外文出版社).

본들이 모든 지명을 漢文으로 표기한 것과 달리 만주어와 한문을 지명 표기에 사용한 滿漢合璧의 지도이다.

<그림 1> □□清內府一統輿地秘圖□□(四排二號의 일부)



<그림 1>은 이 지도에서 山東과 遼東, 그리고 한반도가 함께 그려진 부분(四排二號)인데, 直省인 山東의 지명이 한문으로 표기된 것과 대조적으로 遼東의 지명은 만주어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할 대목은 조선의 모든 지명이 한문이 아닌 만주어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지도에서 지명이 한문으로 표기된 지역은 과거 明의 영토였던 直省뿐이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만주어로 지명이 표기되어 있으니, 淸이 그들의 ‘세계’

를 양분할 경우 조선을 ‘大明’의 세계 바깥에 위치시켰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지도에서 지명이 한문으로 표기된 지역은 漢人 출신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지역인 반면에, 만주어로 표기된 지역에서는 漢人의 참여가 배제되었다.⁴⁹⁾

49) 비록 실제 지도에서는 琉球와 베트남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만약 이 지도에 琉球와 베트남을 포함되었다면 그 지명은 아마도 한문으로 표기되지 않았을까?

[부 록]

<표 1> 順治 초기의 칙사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S01-3	X	禮部侍郎		藍所伊	e1			席所	x1
S02-1	X	戶部郎中		亞赤	x2	刑部郎中		羅車	x3
S02-2	X	工部尙書		興能	e2	攝政王 一等近侍	a	石大理	
S02-3	X	內翰林		祁充格	e3	禮部郎中		朱	x4
S04-1	X	啓心郎	a	布黨		內翰林 秘書院學士		伊	c1
S04-2	X	啓心郎	a	鄔黑		蝦	a	毛	
S05-1	X	內翰林		額	c2	蝦	a	哈	
S05-2	X	禮部威勒	a-	恩格待		秘書院 阿思哈	a-	胡里	
S06-1	X	禮部啓心郎	a	烏許		戶部愛什喇 庫哈峰	a-	谷	
	X	戶部啓心郎	a	甫大樂古		蝦	a	察斜大	

- c1. “伊”: 內翰林秘書院 學士 (覺羅)伊圖(職885).
 - c2. “額”: 內翰林國史院 學士 額色黑, 鑲黃旗 滿洲(職886, 職3279).
 - e1. “藍所伊”: 滿洲 禮部侍郎 藍拜(職336)와 동일 인물로 보임.
 - e2. “興能”: 滿洲 工部尙書 星納(職158)의 다른 轉寫.⁵⁰⁾
 - e3. “祁充格”: 鑲白旗 滿洲(職3180).⁵¹⁾
 - x1~x3. “席所”, “亞赤”, “羅車”: 漢人의 성명이 아님이 거의 확실.
 - x4. “朱”: 출신 불확실.
 - * “攝政王 一等近侍”(S02-2)에 관한 기록은 찾지 못했지만, 당시의 攝政王 도르곤(Dorgon)의 지위를 고려하건대 그 侍衛는 황제의 侍衛와 마찬가지로 八旗 武職이었다고 단정해도 대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⁵²⁾ 다음으로 “啓心
- 50) 당시 星納이 조선에 칙사로 파견된 사실은 □□順治實錄□□에서도 확인된다(□□順治實錄□□ 卷16, 順治 2年 5月 戊申, 147쪽).
- 51) 당시 祁充格이 “內翰林弘文院大學士”로 조선에 칙사로 파견되었음은 □□順治實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順治實錄□□ 卷21, 順治 2年 11月 己未, 187쪽).
- 52) 攝政王 도르곤에 대해서는, Dennerline 2002: 73-106 참조.

郎”(S04-1)은 天聰 5년(1631) 六部를 설치할 때부터 등장하는 官名으로, 만주어 “mujilen bahabukū”를 漢譯한 것인데(劉小萌 2001: 331), 六部에서 啓心郎은 順治 15년에 폐지되었다(李鵬年 1989: 139). 입관 전의 啓心郎에 “國語를 잘 하는 漢員”을 임명하였다는 □□嘯亭雜錄□□의 기록과⁵³⁾ 後金 시기 啓心郎이 六部の 貝勒을 감시하는 汗의 耳目 역할을 하였다는 근래의 연구 성과(劉小萌 2001: 331-332), 그리고 康熙 12년까지 남아있던 宗人府의 啓心郎이 八旗 漢軍(“烏金超哈”) 출신이었다는 사실⁵⁴⁾ 등을 종합해 볼 때, 입관 후에 漢人 官료가 啓心郎에 임명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실제로 <표 1>에 보이는 4인의 啓心郎 중에서 3인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旗人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布黨”(S04-1)은 □□淸實錄□□에 “布丹”으로 표기되어 있는데,⁵⁵⁾ 布丹은 八旗 滿洲 출신으로 順治 12년 滿洲 工部侍郎에 임명된 자였다.⁵⁶⁾ “烏許”(S06-1)는 □□淸實錄□□에 “渥赫”으로 표기되어 있는데,⁵⁷⁾ 渥赫은 正藍旗 滿洲 출신이었다.⁵⁸⁾ “甫大樂古”(S06-1)는 □□淸實錄□□에 “戶部啓心郎 布丹”이라 기록되어 있어,⁵⁹⁾ “布黨”(S04-1)과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蝦”(S06-1)는 “侍衛”를 뜻하는 만주어 “hiya”를 轉寫한 것이다. 「詔勅錄」에는 “蝦”처럼 만주어 관명을 한자로 轉寫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禮部威勒 恩格待”(S05-2)는 “禮部威勒議起喇哈峰 恩格待”를 줄여서 적은 것인데,⁶⁰⁾ “威勒議起喇哈峰”은 만주어 관명의 轉寫가 분명하지만, 六部에는 이렇게 전사될 만한 만주어 관명이 존재하지 않았다.⁶¹⁾ 하지만 漢人 官료의 경우라면 만주어 관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터이므로 恩格待는 旗人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 恩格待는 順治 8년 理事官에서 滿洲 禮部侍郎으로 승진한 恩格德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⁶²⁾ <표 1>에는 만주어 관명을 轉寫한 경우가 두 건 더 있다. “秘書院阿思哈 胡里”(S05-2)는 “秘書院阿士哈尼筆帖大 胡里”를 줄여 적은 것으로,⁶³⁾ “阿士哈

53) 昭槴, □□嘯亭雜錄□□, 43쪽. 단, 여기서 말하는 “漢員”이란 입관 전에 혈통적으로 漢人인 관원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입관 후의 漢人 출신 관원과는 구별해야 한다.

54) □□歷代職官表□□ 卷1, 3b쪽; 王士禛, □□池北偶談□□, 61-62쪽.

55) □□順治實錄□□ 卷30, 順治 4年 正月 戊午, 246쪽.

56) □□職官年表□□, 3143쪽, 343쪽.

57) □□順治實錄□□ 卷45, 順治 6年 8月 丁未, 363쪽.

58) □□職官年表□□, 3233쪽.

59) □□順治實錄□□ 卷45, 順治 6年 8月 丁未, 363쪽.

60) 「賜緞勅」, □□同文彙考□□ 原編 卷7, 21b쪽.

61) 다만 “ichiyara hafan”(理事官/郎中)을 잘못 轉寫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 정도가 가능하다.

62) □□職官年表□□, 340쪽.

63) 「賜緞勅」, □□同文彙考□□ 原編 卷7, 21b쪽.

尼筆帖大”는 “ashan i bithei da”(學士)의 轉寫이다. 또 “戶部愛什喇庫哈峰谷”(S06-1)에서 “愛什喇庫哈峰”은 “aisilakū hafan”(副理事官/員外郎)의 轉寫이며 “谷”은 “谷兒馬洪” 즉 조선 출신의 인물인 鄭命壽를 가리킨다.⁶⁴⁾ 이상의 경우들은 관직 자체는 “滿缺”이 아니지만 해당 직사의 관명이 만주어로 표기된 사실만으로도 그가 漢人이 아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표 2> 順治 중기의 직사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S07-1	X	戶部尙書		巴	c1	圖章京	a	曹	
	X	內院太學士		祁	c2				
S07-2	X	戶部侍郎		車元	e1			賈	x1
S07-3	X	禮部侍郎		藍	c3			布	x2
S07-4	X	刑部啓心郎	a	額色黑	旣出	學士		賚功	e2
S07-5	X	刑部侍郎		達	e3	內院 阿思哈大	a-	馬	
S07-6	X	吏部啓心郎	a	寧		阿思哈大	a-	土	
S08-1	X	禮部尙書		阿思哈	e4	內院 阿思哈大	a-	察	
S08-2	X	啓心郎	a	寧	旣出	兵部侍郎		特	c4
S08-3	X	工部理事官	a-	奚		戶部理事官	a-	巴	
S08-4	X	吏部侍郎		涂	e5	內院學士		葉	c5
S09-1	X	刑部侍郎		易	e6	內院學士		黑	x3
S09-2	X	學士		蘇納	c6	梅勒章京	a	胡復	
S10-1	X	禮部尙書		郎	c7	蝦	a	灘	
S11-1	X	刑部尙書		巴	c8	都察院正堂		圖	e7
S11-2	X	阿思哈	a-			內院學士		奚	x4
S11-3	X	吏部侍郎		寧	c9			莫	x5
S12-1	X	內大臣	a	吳拜		侍郎		科兒坤	e7

- c1. “巴”: 滿洲 戶部尙書 (覺羅)巴哈納(職161).
- c2. “祁”: 內翰林弘文院 大學士 祁充格, 鑲白旗 滿洲(職5, 職3180).
- c3. “藍”: 滿洲 禮部侍郎 藍拜(職339).
- c4. “特”: 滿洲 兵部侍郎 特晉(職342).
- c5. “葉”: 內翰林國史院 學士 葉成額, 八旗 滿洲(職887, 職3247).
- c6. “蘇納”: 內翰林弘文院 學士 蘇納海, 正白旗 滿洲(職888, 職3283).

64) 鄭命壽에 대해서는, 楊海英 2001: 88-106 참조.

- c7. “郎”: 滿洲 禮部尙書 郎球(職164).
 c8. “巴”: 滿洲 刑部尙書 (覺羅)巴哈納(職165).
 c9. “寧”: 滿洲 吏部侍郎 寧古里(職342).
 e1. “車元”: “車克”의 誤記,⁶⁵⁾ 滿洲 戶部侍郎(職339).
 e2. “賚功”: 內翰林國史院의 學士 來袞(職887)과 동일 인물로 보임.
 e3. “刑部侍郎 達”: “禮部侍郎 達”의 誤記,⁶⁶⁾ 滿洲 禮部侍郎 達爾泰(職339).
 e4. “禮部尙書 阿思哈”: 滿洲 禮部尙書 阿哈尼堪(職162)의 誤記.
 e5. “察”: 內翰林弘文院 學士 查布海(職887)의 다른 轉寫, 八旗 滿洲(職3188).
 e6. “涂”: 滿洲 吏部侍郎 屠賴(職340)의 다른 轉寫.
 e7. “易”: 滿洲 刑部侍郎 伊爾都齊(職341)의 다른 轉寫.
 e8. “圖”: 滿洲 都察院左都御史 屠賴(職165)의 다른 轉寫.
 e9. “侍郎 科兒坤”: 滿洲 兵部侍郎 (覺羅)科爾昆(職342)의 다른 轉寫.
 x1. “賈”: 출신 불확실.
 x2~x5. “布”, “黑”, “奚”, “莫”: 漢人의 성명이 아님이 거의 확실.
 ※ “圖章京”과 “梅勒章京”은 만주어 관명의 轉寫로, “圖章京”은 “tui janggjin”= 護軍統領(정2품), “梅勒章京”은 “meiren i janggjin”= 副都統(정2품)을 의미하며, 모두 八旗 武職이었다.⁶⁷⁾ “理事官”은 만주어 관명 “icihiyara hafan”의 漢譯인데, 崇德 3년(1638)에 설치되었고 順治 원년(1644)년에 郎中으로 改名되었다(李鵬年 1989: 139; 鄭天挺 1999: 119). 順治 연간까지는 都察院과 六科 등에서 理事官의 존재가 확인되는데(李鵬年 1989: 406, 411), 宗人府의 理事官에는 漢人이 임명될 수 없었으며⁶⁸⁾ 六科의 副理事官은 八旗 漢軍 출신을 위한 관직이었다(李鵬年 1989: 411). 六部의 경우도 “滿洲 郎中과 員外郎은 처음에 理事官과 副理事官으로 불렀는데, 나중에 고쳐서 漢官의 칭호를 따랐다.”는 기록을 보는데,⁶⁹⁾ 漢人 관료는 理事官에 임명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六部의 理事官이 이미 郎中으로 改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詔勅錄」에 六部 소속의 理事官이 등장하는 까닭은, 당시의 칙사가 만주어 관명 “icihiyara hafan”을 사용하였고 「詔勅錄」이 이를 理事官으로 번역했기 때문이거나 旗人 출신의 관료가 理事官이라는 관명을 관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65) 「攝政王定婚後再送禮物勅」, □□同文彙考□□原編 卷79, 2a쪽.

66) 「頒攝政王喪詔」, □□同文彙考□□原編 卷16, 5a쪽.

67) 이하 팔기 무직의 만주어 관명과 한문 관명은, Elliot 2001: 365-368 참조.

68) □□歷代職官表□□卷1, 3b-4b쪽.

69) 王士禛, □□池北偶談□□, 62쪽.

<표 3> 順治 말기의 칙사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S13-1	X	議政大臣	a	哈什屯		太學士		額色黑	旣出
S13-2	X	多羅機昂邦	a	蘇		刑部侍郎		阿	c1
S14-1	X	多兒吉昂邦	a	阿魯哈		內翰林國史院太學士		額色黑	旣出
S14-2	X	工部尙書		孫	c2	吏部侍郎		覺羅邵	d
S14-3	X	理藩尙書	a	明		弘文院學士		卜	e1
S15-1	X	多羅機昂邦	a	哈		啓心郎	a	巴	
S15-2	X	多里吉昂邦	a	馬爾札哈		侍郎		吳達禮	e2
S16-1	X	禮部尙書		蔣	e3	吏部侍郎		覺羅碩	d
	X	工部尙書		郭科	b1	禮部侍郎		祁繼	c3
S18-1	X	太常卿		馬羅哈	x1	禮部員外郎		邵	x2
S18-2	X	禮部侍郎		折	e4	都察院都御史		對	c4
S18-3	X	理藩院侍郎	a	達		禮部額者庫	a-	甘	

- b1. “郭科”: 滿洲 工部尙書(職246).
- c1. “阿”: 滿洲 刑部侍郎 阿思哈(職344).
- c2. “孫” 滿洲 工部尙書 孫塔(職167).
- c3. “祁繼”: 滿洲 禮部侍郎 祁徹白(職346).
- c4. “對”: 滿洲 都察院左副都御史 對喀納(職346).
- e1. “卜”: 內翰林弘文院 學士 布顏(職893)의 다른 轉寫, 八旗 滿洲(職3144)
- e2. “吳達禮”: 督捕侍郎(職345), 正藍旗 滿洲(職3157).
- e3. “蔣”: 禮部尙書가 아닌 大學士 蔣赫德,⁷⁰⁾ 鑲白旗 漢軍(職3267).
- e4. “折”: 禮部侍郎이 아닌 滿洲 翰林院掌院學士 折庫納(職897).
- e5. “對”: 滿洲 都察院左副都御史 對喀納(職346), 正藍旗 滿洲(職3252).
- x1. “馬羅哈”: 漢人의 성명이 아님이 거의 확실.
- x2. “邵”: 출신 불확실.
- ※ “議政大臣”은 議政王大臣會議의 일원을 가리키며 모두 滿洲 출신이었다.⁷¹⁾ 다음으로 “多羅機昂邦”, “多兒吉昂邦”, “多里吉昂邦” 등은 모두 內大臣의 만주어 관명(“dorgi amban”)을 轉寫한 것이다. “理藩院侍郎”은 대표적인 滿缺 관직 가운데 하나이고,⁷²⁾ “禮部額者庫”에서 “額者庫”란 主事의 만주어 관명(“ejeku hafan”)을 轉寫한 것이다.

70) □□順治實錄□□ 卷128, 順治 16年 9月 戊寅, 995쪽.

71) 昭槎, □□嘯亭雜錄□□, 93쪽.

<표 4> 康熙 전반기의 칙사 (1)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K01-1	X	工部尙書		喇	c1	刑部侍郎		尼	c2
K01-2	X	左都御史		覺羅雅	d	郎中		明	x1
K02-1	X	頭等侍衛	a	哈		太淸寺卿		“失其名”	x2
K02-2	X	刑部侍郎		勒得洪	c3	郎中		海喇孫	x3
K04-1	X	工部侍郎		柯	e1	郎中		石	x4
K05-1	X	戶部侍郎		雷虎	b1	郎中		穆	x5
K06-1	X	理藩院侍郎	a	綽		郎中		伍	x6
K06-2	A	一等蝦	a	童		一等蝦	a	顧	
K08-1	X	內大臣	a	巴		噶喇昂邦	a	邵	
K09-1	X	土伊章京	a			一等蝦	a		
K10-1	X	一等侍衛	a	對		二等侍衛	a	鄭	
K13-1	X	宜都額眞	a	胡		侍讀學士		口+賴	e2
K13-2	A	一等侍衛	a	伍		一等侍衛	a	賽	
K13-3	A	一等侍衛	a	德		一等侍衛	a	祁	
K14-1	A	內大臣	a	樹西泰		一等侍衛	a	桑額	
K14-2	X	散秩大臣	a	卜		二等侍衛	a	納	
K15-1	X	宜都額眞	a	噶		二等侍衛	a	費	

- b1. “雷虎”: 滿洲 戶部侍郎(職305).
- c1. “喇”: 滿洲 工部尙書 喇哈達(職170).
- c2. “尼”: 滿洲 刑部侍郎 尼滿(職348).
- c3. “勒得洪”: 滿洲 刑部侍郎 (覺羅)勒德洪(職348).
- e1. “柯”: 滿洲 工部侍郎 科爾科代(職349)의 다른 轉寫.
- e2. “口+賴”: 康熙 14년 侍讀學士에서 滿洲 翰林院掌院學士로 승진한 喇沙里(職906)의 다른 轉寫.
- x1 “明”, x3 “海喇孫”, x5 “穆”, x6 “伍”: 漢人の 성명이 아님이 거의 확실.
- x2. “失其名”: 출신을 알 수 없음.
- x4. “石”: 출신 불확실.
- ※ “頭等侍衛”는 “一等侍衛”의 다른 표현이고, “土伊章京”은 “圖章京”과 마찬가지로 “tui janggin”을 전사한 것이다. “宜都額眞”은 만주어 “idui ejen”의 轉寫로서 值班 侍衛들을 통솔하는 “領班” 侍衛를 가리킨다(商鴻逵 1990: 226). 噶喇昂邦은 “galai amban”=前鋒統領(정2품)을 轉寫한 것이다.

72) □□淸史稿□□ 卷115, 3296-3297쪽.

<표 5> 康熙 전반기의 칙사 (2)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K16-1	X	頭等侍衛	a	阿		侍讀學士		王	e1
K17-1	X	一等侍衛	a	塞		內閣學士		舒	e2
K17-2	X	一等侍衛	a	馬		二等侍衛	a	噶	
K17-3	A	宜都額眞	a	郎		一等侍衛	a	安	
K18-1	A	一等侍衛	a	費		一等侍衛	a	多	
K19-1	A	內閣學士		希福	e3	一等侍衛	a	壯尼大達	
K19-2	X	一等侍衛	a	孫郭		護軍參領	a	魏	
K20-1	X	翰林院 侍讀學士		牛鈕	e4	二等侍衛	a	覺羅阿	
K20-2	X	一等侍衛	a	羅		護軍統領	a	杭	
K21-1	X	禮部侍郎		阿	e5	四品官		孟	x1
K23-1	B	(一等)侍衛	a	孛柱 巴圖魯		內閣學士		丹代	e6
K23-2	X	內大臣	a	斬		內閣學士 侍讀		賽	e7
K24-1	X	護軍統領	a	佟保		內閣學士		丹	e8
K26-1	X	副都統	a	蘇		護軍參領	a	布	
K26-2	X	一等侍衛	a	趙		二等侍衛	a	齊	
K27-1	A	內大臣	a	阿		一等侍衛	a	羅	
K28-1	X	護軍統領	a	穆圖		侍讀學士		博濟	e9
K28-2	X	二等侍衛	a	豪尙		二等蝦	a	丙鬱	
K28-3	X	副元帥	a	海		一等蝦	a	巴	
K28-4	X	侍讀學士		馬頭	x2	三品蝦	a	斗牛	
K30-1	A	禮部侍郎		西安	e10	一等侍衛	a	羅	

e1. “王”: 康熙 21년 侍讀學士에서 漢缺 內閣學士가 된 王國安(職911), 正白旗 漢軍(職3138).

e2. “舒”: 康熙 18년 侍讀學士에서 滿洲 光祿寺卿이 된 舒恕(職1149).

e3. “希福”: 滿洲 內閣學士 禧佛(職910)의 다른 轉寫.

e4. “牛鈕”: 正藍旗 滿洲(職3135).

e5. “阿”: 滿洲 內閣學士 阿蘭泰(職911).

- e6. “丹代”: 滿洲 內閣學士 丹岱(職913)의 다른 轉寫.
- e7. “賽”: 康熙 25년 侍讀學士에서 滿洲 內閣學士가 된 賽弼漢(職915).
- e8. “丹”: □□同文彙考□□의 다른 기록에 “丹代”⁷³⁾
- e9. “博濟”: 康熙 28년 翰林院 侍講學士에서 滿洲 內閣學士가 된 博際(職918)의 다른 轉寫.
- e10. “西安”: 滿洲 內閣學士 星安(職920)의 다른 轉寫.
- x1. “孟”: 출신 불확실.
- x2. “馬頭”: 漢人의 성명이 아님이 거의 확실.
- ※ 護軍統領과 副都統은 각각 “tui janggjin”의 “meiren i janggjin”의 漢譯임은 앞에서 지적했거니와, 역시 八旗 武職인 護軍參領(정3품)은 “bayara jalan-i janggjin”의 漢譯이다. 다만 “副元帥”(K28-3)는 정식 관명은 아니고 아마도 副都統을 달리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字柱巴圖魯(K23-1)는 「詔勅錄」에 단지 “侍衛”라고 기록되었지만, □□同文彙考□□의 다른 기록을 통해서 당시 그의 관직이 “一等待衛”였음을 알 수 있다.⁷⁴⁾

<표 6> 康熙 후반의 칙사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K33-1	X	經筵日講 官教習庶 吉士		常壽	e1	侍衛	a	事關且	
K36-1	B	散秩大臣	a	永		內閣學士		壽	c1
K36-2	X	副都統	a	瓦		侍讀		覺羅華	d
K41-1	X	翰林院侍讀		滿保	e2	二等待衛	a	專大雅	
K42-1	X	副都統	a	翁		內閣學士		色	c2
K42-2	A	翰林院掌 院學士		揆叙	b1	頭等待衛	a	噶爾圖	
K48-1	X	頭等待衛	a	敖岱		內閣學士		年羹堯	e3
K52-1	X	頭等待衛	a	阿齊圖		護獵總管	a	穆克登	
K56-1	A	翰林院學士		阿克敦	e4	鑾儀衛		張廷枚	e5
K56-2	A	日講官		阿克敦	旣出	鑾儀衛		張廷枚	旣出
K57-1	A	內閣學士		德音	b2	治儀正		張廷枚	旣出

73) 「遣官查擬勅」, □□同文彙考□□ 原編 卷51, 4a-4b쪽.

74) 「諭祭文」, □□同文彙考□□ 原編 卷5, 30b쪽.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K59-1	A	內閣學士		額和納	e6	一等侍衛	a	眞德祿	
K59-2	B	內大臣	a	查柯丹		禮部侍郎		羅	c3
K61-1	X	內閣學士		阿克敦	旣出	二等侍衛	a	佛倫	
K61-2	B	頭等侍衛	a	那眞		內閣學士		吳爾泰	b3
K61-3	A	內閣學士		額和納	旣出	頭等侍衛	a	廣福	

- b1. “揆叙”: 滿洲 翰林院掌院學士(職929).
- b2. “德音”: 滿洲 內閣學士 (職941).
- b3. “吳爾泰”: 滿洲 內閣學士 (職944).
- c1. “壽”: 滿洲 內閣學士 壽肅 (職925).
- c2. “色”: 滿洲 內閣學士 色德里 (職929).
- c3. “羅”: 滿洲 禮部侍郎 羅瞻 (職390).
- e1. “常壽”: 滿洲 翰林院掌院學士 常書(職922)의 다른 轉寫.
- e2. “滿保”: □□同文彙考□□의 다른 곳에 “日講官起居注翰林院侍講 覺羅滿保.”⁷⁵⁾
- e3. “年羹堯”: 漢缺 內閣學士(職934), 鑲黃旗 漢軍(職3149).
- e4. “額和納”: 滿洲 內閣學士 額黑納(職942)의 다른 轉寫.
- e5. “阿克敦”: 正藍旗 滿洲(職3183).
- e6. “張廷枚”: 八旗 漢軍(職3209).
- * 穆克登(K52-1)은 백두산 정계비의 건립과 관련하여 유명한 인물이거나, 그 관직 “護獵總管”은 □□清實錄□□에 “打牲烏喇總管”으로 표기되어 있다.⁷⁶⁾ “打牲烏喇總管”은 淸 皇室的 사냥터를 관리하는 內務府 소속의 관직이다(劉子揚 1994: 314; 張存武 1987: 195-196; 張杰 2005:227-228).

<표 7> 雍正 연간의 칙사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Y01-1	A	內閣學士		常保	b1	頭等侍衛	a	明全	
Y01-2	X	通政使		圖	c1	頭等	a	覺羅七	
Y01-3	B	散秩大臣	a	曾成		內閣學士		鄂托	e1
Y01-4	X	散秩大臣	a	欽拜		都御史		岳	c2
Y01-5	X	副都統	a	額而德		頭等侍衛	a	額麟臣	

75) 「諭祭文」, □□同文彙考□□ 原編 卷5, 36b쪽.
 76) □□康熙實錄□□ 卷246, 康熙 50年 5月 癸巳, 441쪽.